

부산지방법원 2021. 10. 21 선고 2020가단3464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2. 7. 22 선고 2021나66302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1. 10. 21 선고 2020가단346482 판결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9. 16.

판 결 선 고 2021. 10. 21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2020. 3. 31.경 체결된 15,000,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4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, 'D이 원고로부터 사천시 E 지상 건물 공사 중 내부인테리어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를 포기하였는데, D이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선지급받은 돈 중 35,300,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'고 주장하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31246호로 위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. 7. 4. 위 법원으로부터 'D은 원고에게 35,3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4. 8.부터 2014. 4. 2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(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받았다.

나. 한편, D은 F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G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,000,000원, 월 차임 200,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2020. 3. 31.경 F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5,000,000원을 반환받아 그 무렵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는데(다만 위 돈의 일부는 F의 처인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. 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, D은 그 무렵 위 돈과 시가 4,000,000원 가량의 화물차 1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7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, 위 임대차보증금과 시가 4,000,000원 가량의 화물차 1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, 위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,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D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[원고는 증여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,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,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이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므로(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),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]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재덕